

[별표 1]

방역기준 평가표(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1. 농장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평가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농장출입	<input type="checkbox"/> 농장 출입차량 소독			
	◎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하여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 * 고정식(10만수 이상 터널식) 소독시설 및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 차량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및 차량전용 고압분무기 작동			
	◎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동결방지 조치			
	◎ 농장 출입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으며 소독 완료 시까지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음			
	◎ 농장 출입 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석 등 차량 내부 소독 실시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input type="checkbox"/> 농장 종사자·외부인 출입시 방역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고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 소독을 실시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오염지역에서 준오염지역으로 진입시 방역실에서 전용의복·신발·장갑(1회용 포함) 착용			
	<input type="checkbox"/> 축산차량 농장 내부 진입 빈도			
	◎ 모든 농장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 항상 닫혀 있음			
○ 분뇨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와 준오염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외부울타리 바깥의 별도 장소(퇴비장 등)에서 반출				
○ 알 운반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농장 진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집란실 입구까지만 진입하여 계란 상차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농장 바깥의 상하차 장소를 지정 운영 **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고압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 평가사항	여	부
	분무기를 설치			
	○ 사료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사료를 공급			
	○ 농장 소유·임차 및 외부인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농장 외부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			
농장 내부	<input type="checkbox"/> 야외에 주요 기자재·물품·장비 미방치 및 농장 마당 청결 유지			
	● 축사 외부 기자재·물품·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			
	○ 축사·집란실 전용장비(지게차 등)를 야외에 방치하지 않으며 사용 전·후에는 세척·소독을 실시			
	● 축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도구·기자재가 야외에 노출되지 않으며 실내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 가금운반도구(상자·바구니), 알운반도구(난좌·합판·파레트), 폐사체수거통, 축사내부 청소도구 등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지 않음			
	● 축사 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			
	● 축사 및 사료빈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 축사 내·외부, 퇴비장, 사료창고를 주기적 청소			
	●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있는 경우 즉시 분변을 치우고, 세척·소독을 실시하며 야생동물 출입 방지시설(울타리·차단망 등)을 점검·보수			
	<input type="checkbox"/> 신발소독조			
	● 관리사무소, 사료창고 등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고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신발소독조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축사 출입	<input type="checkbox"/>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전실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 소독을 실시			
	●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 신발 등 비치, 축사 출입시 축사전용 작업복 착용 및 신발 갈아신기, 손 세척 또는 소독 후 전신 소독 실시(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사용할 장갑·마스크를 갖춰두고 반드시 착용) * 내부용 전용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용 전용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사용한 장갑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후 매번 소독·세척하여 사용 가능)			
	● 전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신발소독조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 시 즉시 교체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 평가사항	여	부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전실을 주 1회 이상 청소·소독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			
	● 축사 내부(바닥) 및 외부(전체)를 청소·소독 및 청결 유지 * 축사 내부 전체는 입식전·출하후에 고압분무 소독을 실시			
	<input type="checkbox"/> 폐사체 처리			
	● 폐사체 처리시 부출입구(쪽문)를 통해 배출하지 않거나 부출입구(쪽문)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			
기록 유지	<input type="checkbox"/> 분뇨 처리			
	● 분뇨 처리시 종사자가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지 않거나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갖추고 소독을 실시			
	<input type="checkbox"/> 차량·사람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 각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하고 빠짐없이 기재 * 출입기록부·소독기록부 1년간 보관			
	<input type="checkbox"/> 가축 폐사 및 산란 현황 등 기록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기록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제출(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가축의 거래 기록 유지			
●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을 유지				
방역 의식	<input type="checkbox"/> 축산차량 소독필증 회수·보관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회수·보관 * 평시에는 자체 거점소독소(도계장 등) 소독필증을 회수·보관			
	<input type="checkbox"/> 방역교육 이수 여부			
●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방역 의식	<input type="checkbox"/> 농장 종사자 방역의식 등 평가 결과			
	○ 농장·축사 출입시 차단방역 절차 등 현장 시연평가 : 상 * 방역실, 전실 출입시 기준·절차 또는 소독약품 보관·희석·교체 등 시연			
	○ 소독설비·방역시설 관리, 방역기준 준수, 추가 평가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운영 * 닭 사육규모 10만수 이상 농가에 한함 ** 자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하고 관련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 평가사항	여	부
	기록은 2년간 보관			
	<input type="checkbox"/>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규모가 10만수 이상인 농장은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 실시</li> <li>※ 사육규모가 5만수 이상인 농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 실시</li> </ul>			
	<input type="checkbox"/> 입식 사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에 신고</li> <li>○ 입식 신고 전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li> </ul>			
	<input type="checkbox"/>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 방역실, 축사의 각 출입구(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축사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여부, 방역 기준 준수 및 임상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li> <li>◎ 각 영상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li> </ul>			
	<input type="checkbox"/>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 각 출입구에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및 소독 실시</li> <li>○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터널식+고압분무) 실시</li> <li>○ 출입자가 방역실에서 방역복 및 덧신 등을 착용</li> <li>○ 농장 마당에 대한 청소·소독을 실시</li> <li>○ 전실에서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li> <li>○ 축사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li> <li>○ 종사자가 축사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갖추고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소독을 실시</li> </ul>			
	개별 기준	<input type="checkbox"/> 일회용 난좌·초생추 운반용 일회용 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용으로 1회용 난좌를 사용하거나 다회용 난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li> <li>* 초생추 운반용 박스도 1회용 난좌에 준해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li> <li>*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 전에 세척·소독</li> </ul>				

## 2.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준수 평가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 평가사항	여	부
농장 출입	<input type="checkbox"/> 울타리·담장			
	◎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담장 등에 농장 출입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담장을 설치(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조치한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 외부 울타리·담장 및 내부 울타리에 훼손된 부분(틈새 등)이 없도록 유지 보수			
	○ 차량이 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하는 경우 청결지역과 준오염지역 사이에는 차량 진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의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사료보관통(사료빈) 또는 알보관창고를 포함하여 설치 * 청결지역(축사 및 집란실) 출입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축사 또는 집란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외부 울타리·담장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이며 야생동물이 농장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 * 내부 울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 나목을 준용하여 설치			
	○ 야생동물의 충돌 및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속성 소재의 철망·철판 또는 콘크리트·벽돌 등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통제점검			
	◎ 농장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 차단장치 설치			
	◎ 농장, 방역실의 각 출입구에 사람, 차량 출입 등에 관한 영상 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고, 소독 완료까지 이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차단 바 등 차량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			
	<input type="checkbox"/> 외부 물품 반입 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와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 외부 반입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			
	<input type="checkbox"/> 농장 주·부 출입로 방역시설			
◎ U자형 또는 터널식(10만수 이상) 고정소독기를 설치 * 10만수 이상 농장에서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인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정된 경우 고정식 소독시설과 전용 고압분무기를 설치하고 소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각 입구에 설치 * U자형 또는 터널식 고정소독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			
	◎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를 갖추			
	<b>□ 방역실</b>			
	◎ 농장 입구(외부 울타리·담장 경계면)와 내부 울타리 경계면에는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각 설치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갖추			
	◎ 출입자의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			
	◎ 기후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컨테이너·부스·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을 갖추			
	○ 방역실에 모든 출입자의 옷, 물품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b>□ 주차장 위치</b>			
	○ 직원 및 외부인 등 차량 주차장이 농장 외부에 위치			
농장 내부	<b>□ 축사(동별) 출입구(뒷문)</b>			
	◎ 축사 각 출입구 및 각 축사 동별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영상기록을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			
	○ 전실이 설치된 주출입문 이외의 모든 부출입문이 안쪽에서 열 수 있으나,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축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축사 뒷문이 있는 경우 전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축사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음			
	<b>□ 야생동물 차단망</b>			
	◎ 각 축사의 환풍시설, 계분·집란벨트 연결부위,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새 등)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가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			
	◎ 야생동물, 설치류 등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차단망 및 축사의 입구·지붕·벽에 차단망을 설치			
	◎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을 실시			
○ 농장 내 사료창고, 퇴비장 등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 평가사항	여	부
	<input type="checkbox"/> 신발 소독조 설치			
	◎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input type="checkbox"/> 숙소 위치			
	○ 종사자의 숙소가 청결지역 내 또는 준오염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숙소 출입구가 축사 출입구와 구분되어 있으며 소독시설을 갖추두고 출입시 소독을 실시			
축사 출입	<input type="checkbox"/> 전실			
	◎ 축사 동별로 전실을 설치하되 닭을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 전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갖추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출입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축사(사육시설) 출입시 전실에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를 우회하여 진입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구조물을 갖추 * 출입자가 신발을 갈아신고 진입하도록 폭 1미터 이상의 발판을 구비하거나 출입자가 앞서서 신발 갈아신기 하도록 높이 45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펜스 또는 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청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각각 설치 * 전실 내부 또는 외부 신발을 신발소독조에 담아두어 보관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신발장은 미설치 가능			
	○ 전실 외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내부 청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각각 설치			
	○ 외부 신발 및 축사전용 신발의 세척·소독용 솔을 각각 비치			
	○ 전실 내부 청결구역에서 사용하는 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 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 전실 바닥 전체 면적이 소독이 용이한 콘크리트, 시멘트 또는 장판 등의 재질로 포장				
개별 기준	<input type="checkbox"/> 집란실			
	◎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집란실 내부로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에 전실(전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설치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input type="checkbox"/>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의 구분 및 관리			
◎ 사육시설과 GP의 출입구는 서로 분리			
◎ 사육시설과 별도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			
○ 사육시설과 GP 사이에 별도의 출입 통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통로에 소독시설을 설치			
○ 해당 농장 내 GP로 다른 농장의 계란은 반입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식용란 상차장			
◎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분벨트/집란벨트 주변 청소상태			
○ 계분·집란벨트 및 벨트 주변을 주기적 청소·소독 실시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 하부 바닥에 분변·깨진계란 등 오염물질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샤워장			
◎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추 ※ 산란 종계장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종란 보관 창고			
○ 외부 신발 및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설치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소독시설을 갖추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세척용 솔을 갖추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손 세척 또는 소독을 위한 물품·설비를 갖추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용어 설명

가. ‘청결지역’이란 축사(사육시설) 및 집란실을 말한다.

나. ‘준오염지역’이란 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담장 안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입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내부 울타리 안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한다.

다. ‘오염지역’이란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담장 바깥 지역을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농장 내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농장 운영상황 조사

조사 항목	
<input type="checkbox"/>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시 농장 자체 처리 여부(①자체처리 ②위탁처리 ③기타)	
○ 분뇨처리 방법은?(①퇴비장 ②컴포스트 ③기타)	
<input type="checkbox"/> 폐사체 관리시설	
○ 폐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①랜더링 ②소각 ③위탁처리 ④기타)	

#### 4. 부화장 평가

평가 항목	● 법정 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시키지 않음			
● 산란종계의 알만 부화 시킴			
●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축산법」에 따라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발급			
●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			
<input type="checkbox"/> 시설 및 장비			
●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			
●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 *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			
●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			
◎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추			

## 5. 농장 주변환경 조사

조사 항목	
<input type="checkbox"/> 철새도래지	
○ 농장 반경 500m 내 철새도래지 유무	
○ 인근 철새도래지와 거리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지역	
<input type="checkbox"/> 가금 사육농장	
○ 농장 반경 500m 내 가금 사육농장 유무	
○ 인근 가금 사육농장과 거리	
○ 인근 가금 사육농장의 가금 사육 현황(축종, 사육수수 등)	
<input type="checkbox"/> 소류지, 소하천	
○ 농장 반경 500m 내 소류지 또는 소하천 유무	
○ 인근 소류지 또는 소하천과의 거리	

## 6. 평가 및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방법

가. 제1호·제2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및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부화장은 제4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중에서도 부적합한 항목이 없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3개 이내인 경우 평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을

통해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사항 중 농장 구조 및 지형 상 충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운용중인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해당 추가평가사항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목에 따른 나 또는 다 유형을 부여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유형을 부여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평가사항이 평가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다"
-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하 및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하 발생한 경우 또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평가 사항이 평가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 발생한 경우 : "나"
- 3)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하 발생한 경우 : "가"

라.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라"유형을 부여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5호에 따른 조사결과 농장이 철새도래지, 가금 사육농장, 소류지, 소하천 등에 인접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추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마련하지 않거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에 위치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기준 유형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방역기준 평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기관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이 평가 또는 재평가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설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신청한 산란계 농장 등에 보급할 수 있다.

사. 평가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평가사 중 컨설

턴트를 지정하여 희망하는 신청농가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